



의안번호

제 44 호

##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서원 의원 외 4 명
발의연월일	2020. 5. 8.

#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 
제 44 호

발의연월일 : 2020. 5. 8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조배식, 최정숙,  
이계천, 김남충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「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」 제40조제1항제4호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때에도 어려운 시민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상수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때에도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(안 제40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지방자치법 제22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36조, 제38조, 제6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0. 5. 8. ~ 5. 12.(5일간)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원 의원 외 4 인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,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, 위기 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
8.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재난사태 선포지역, 위기경보 발령 및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성 명	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원 의원 외 4인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~3 (생략)</p> <p><u>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</u></p> <p>5~7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0조(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~3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,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,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</u></p> <p>5~7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■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**제36조(재난사태 선포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7. 26.>

1. 삭제 <2014. 12. 30.>
2. 삭제 <2014. 12. 30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7. 26.>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1. 17., 2017. 7. 26.>

1. 재난경보의 발령, 인력·장비 및 물자의 동원, 위험구역 설정, 대피명령,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

2.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
  3.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
  4.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61조에 따른 휴업 명령 및 휴원·휴교 처분의 요청
  5.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7. 26.>

⑤ 삭제 <2014. 12. 30.>[전문개정 2010. 6. 8.]

**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**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[전문개정 2016. 1. 7.]

**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**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[제59조에서 이동, 종전 제60조는 삭제 <2013. 8. 6.>]